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

의 안 번 호	1073

제안일자 : 2019. 12. 18.
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제안 이유

○ 2019년 12월 17일 제290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현행 법령 규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번안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안 제1조를 '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'으로 명시함

○ 안 제4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실시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○ 안 제4조제2항은 연수교육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.

안 제1조 중 “그 밖에”를 “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”로 하고,

안 제4조 제목을 “(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)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1항 중 “개업공인중개사·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”을 “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,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번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번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인중개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그 밖에** ---------- ----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** ---------- ----------.
〈신 설〉	제4조(**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**)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**개업공인중개사·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**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**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**	제4조(**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**) ① ---------- ---------- **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,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 **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**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그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)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,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인중개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----------.
〈신 설〉	제4조(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)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,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